

기사에서 김 모 전 충남 정무부지사가 충남도의 정실인사에 의해 도 산하 장학회와 사회복지협회의 장으로 일하면서 부지사 때보다도 많은 판공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충남 정무부지사는 위 두 자리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월급이나 판공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부지사는 충남도가 조 모씨를 사회복지협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사례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은 2003년 5월 개관한 조두남 기념관과 관련, 경남도민일보측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조두남 선생의 친일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마산시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인 문제로 시정(市政)을 비난한 언론보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는 2004년 4월 8일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이 경남도민일보와 비난기사 작성기자 및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친일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피고들의 행동이 위법행위로 평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X.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가운데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95%를 넘었다.

<표1>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내 용	신 청 인	피 신 청 인
필요하다	95.4%	97.8%
필요없다	4.6%	2.2%
무응답	0%	0%
합계	100.0%	100.0%

<표2>언론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내 용	신 청 인	피 신 청 인
매우 편파적	7.8%	6.7%
편파적	14.4%	13.3%
보통	31.1%	22.2%
중립적	18.9%	40.0%
매우 중립적	27.8%	17.8%
무응답	0%	0%
합계	100.0%	100.0%

<표3>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

내 용	신 청 인	피 신 청 인
합의	3.14	3.20
불성립	1.50	3.19
취하	2.81	3.80
기각	1.67	4.25
각하	2.67	4.40

표1,2,3의 출처: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표4>손해배상 청구권의 중재권한에 대한 의견

내 용	일 반 시 민	언 론 인
바람직하다	56.5%	17.7%
시기상조다	23.0%	19.7%
불필요하다	12.0%	44.9%
비현실적 발상이다	8.5%	17.7%

<표5>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대 응 방 법	신 청 인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71.8%
법원에 소송제기	14.5%
해당매체에 적극 항의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1.8%
대응하지 않겠다	1.8%
기타	2.7%
무응답	0%

표4,5의 출처: 주동황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XI. 맺음말

이상으로 지난 1월 1일에 제정,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살펴봤다.

언론중재법은 1980년 12월 31일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태동된 언론중재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 오래전부터 입법이 추진돼오다가 2004년말 법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마침내 단일 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조정과 중재라는 개념조차 불명확했던 언론기본법과 비교할 때 그동안 언론중재제도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정간물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새롭게 마련한 것 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 처음 도입되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비춰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정권고 제도는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의 부합 문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며, 또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역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에 의한 해결은 독자와 국민들의 관심에서 한참 떨어진 뒤에야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미뤄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의 소극적 분쟁해결기관에서 적극